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21

발의연월일: 2020. 11. 6.

발 의 자: 박형수·김정재·지성호

김석기 · 서일준 · 임이자

조경태・金炳旭・ 한무경

추경호 · 조수진 의위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개정법 적용으로 현행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되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실정임.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주택개발사업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신혼부부행복주택 등 취약 계층을 위한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늘어난 세금 부담을 향후 분양가에 전가시켜 수분양자에게 피

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고자 함(안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종합부동산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공 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 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법인의 경우 제9조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u><신 설></u>	제3조(종합부동산세율 조정에 따
	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
	조의2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임대주택 중 「공공주
	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
	매입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으로서 전용면적이 149제곱미
	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법
	인의 경우 제9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
	권을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